

#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도제415-360	(전화번호)	전결 규정 조항 전결 사항
처리기간	시 장		
시행일자	결재 1978. 3. 20		
보존년한	3-8 NO. 415		
보조 기관	제2부시장	협 법무담당관참사필	조 고시제 415호
	도시정미3과장		
	도시계획과장		
기안책임자	정광훈 과장 3 강 형우	발 행 일 1978. 3. 20 서울특별시	
경유 수신 참조	각 안 참조	발 신	
제 목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	과 시 사 1978. 3. 20 제 43 호	담 당 자 법제제장 법무담당관

(제1안): 내부결재.

1. 당시 관내 성북구 장위동 대3-40호 노선에서 성북역 앞까지 중1-182호 노선을 연결시켜 지역 교통을 원활히 처리근저 성북구청에서 결정 요청이 있어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건설부 고시 41호(77.3.16)의 권한 위임 사항에 따라 이를 별안과 같이 고시근저 합니다.
2. 본건은 당시 제4차(78.2.2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5M 폭 의결안을 20M로 수정 가결된 사항입니다.

(제2안): 고시안 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을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건설부 고시 41호(77.3.16)의 권한 위임 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도시 정비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78. 3

이 도로 변경 결정 소서

서울특별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시 점	종 점	비고
기정	소로	1		10-15 <sup>m</sup>	240 <sup>m</sup>	월계동 402-2	성북역 앞	
변경	중로	1	182	20 <sup>m</sup>	700 <sup>m</sup>	광희동 (대340)	"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은 (근면생략) "끝"

(제3안)

수신: 건설부 장관 발신: 시장

1. 당시 관내 도시계획 시설(도로)을 별첨과 같이  
변경 결정 하엿기 보드립니다.

첨부: 1. 근시문 사본 몇 도면 각 1부 "끝"

(제4안)

수신: 총무처 장관 (문화공보관) 발신: 시장 (국장)

제목: 관(A)의 제재 의뢰

1. 다음과 같이 제재 의뢰 합니다.

가. 제재구분: 근시

나. 제재건명: 도시계획 시설(도로) 변경결정

다. 근거법규: 도시계획법 제12조

라. 제재내용: 별첨 근시문 사본.

첨부: 근시문 사본 2매 (1매) "끝"

(제5안)

수신: 도봉구청장 발신: 시장

1. 귀구 관내 도시계획 사항이 별첨과 같이  
고시 되었기 통보하니 관계기에 통보하여 도시계획  
업무에 차오 없기 바라며 도시계획법 제13조에 의한

지적 승인을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고 성북구 관내  
장위동 지역에 대하여는 성북구와 별도 사전 협의후  
처리토록 할 것.

첨 부 : 근시문 사본 및 도면 각 1부 "결"

(제 6안)

수 신 : 성북구청장

발신처 : 서울특별시

1. 귀구 관내 도시 계획 사항이 별첨과 같이  
근시 되었기 흥보하니 관계라에 흥보하여 도시 계획  
업무에 착오 없기 바라며 본 도로는 도봉구청에서  
입안 전달된 사항으로 도봉구청에서 지적승인토록  
되어 있으므로 귀구 관내 장위동 일대에 대한 도봉구  
청 지적 승인 협의에 차질 없도록 협조할 것.

첨 부 : 근시문 사본 및 도면 각 1부 "결"

